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| | |
|------------|------|
| 의 안 번 호 | 1685 |
|------------|------|

2020. 9. 8.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수 석 전 문 위 원

1. 제안경위

- 2020. 7. 13.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(2020. 7. 14. 회부)

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과태료의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함(안 제44조).

4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에 따라 실시된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“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” 심의결과 제시된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윤기 의원이 발의하여 ‘20년 7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
○ 현행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(이하 '인권기본조례')에서는 시민의 인권¹⁾과 관련하여 타 조례를 제·개정하는 경우 인권기본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면서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'인권영향평가'²⁾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(붙임-1 참고).

○ 이를 근거로 서울시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'20.4.2. “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”(이하 '인권위원회')를 개최하여 인권영향평가결과 확인된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적 조항에 대하여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개정을 권고하였음³⁾.

-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(인권위원회, 서울연구원, 변호사 등)의 검토·협의를 거쳐 3개 분야⁴⁾ 9개 항목⁵⁾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는데, 그 결과 총 96개 조항(조례 57개, 규칙 5개)에서 보완사항이 도출되었고, 이를 토대로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의 개정을 권고하게 되었음⁶⁾.

1) '인권'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(인권기본조례 제2조제1호)

2) '인권영향평가'란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·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로서, 평가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·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,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가를 의미함

3)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.(인권기본조례 제17조제2항)

4) 1. 차별 및 인권침해, 2.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, 3. 시민참여보장

5) 1.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, 2. 편견·선입견에 근거하여 대상을 한정, 3.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, 4.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(상위법에 근거한 시설 이용 감면(면제)의 올바른 적용여부, 5. 반환권 제약(공공시설 이용 시 반환조항이 미비한 경우), 6. 구제권 제약(과태료 부과·징수의 법적근거 여부 및 구제절차 포함 여부), 7. 개인정보보호권 보장, 8.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참여권, 9.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

- 개정 권고내용 중에는 구제권 등 기본권보장 및 권리구제와 관련한 차별요소에 대한 수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, 이는 과태료가 부과·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(조항)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구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(붙임-3 참고).

| 현 행 | 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|--|--|
| 제44조(과태료)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파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 다. 이 경우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영 제79조제1 항을 준용하고,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 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 | 제44조(과태료 부과·징 수 등) ----- ----- ----- 사람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부과·징수 및 이의 신청 ----- -----. | 제44조(과태료 부과·징 수 등) ----- ----- ----- 사람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부과·징수 및 이의 제기 ----- -----. |

-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4조의 제목과 본문을 개정하여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뿐 아니라 ‘과태료의 이의제기’도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7)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일부 오탈자 수정 외에 특이사항은 없음.
- 참고로, 서윤기 의원은 인권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‘의안번호 164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부터 ‘의안번호 169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이르기까지 총 53개(이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조

6) 출처: 서울시 보도자료, 2020.4.10.

7)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자 지난 2007.12.31.제정되었음(붙임-2 참고).

례는 총 6건임) 개정조례안을 동시에 발의(‘20.7.13.)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바, 향후 위원회 소관조례 제·개정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의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.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 당 자 |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 은 정 |
| 연 락 처 | 02-2180-8208 |
| 이 메 일 | urbanth@seoul.go.kr |

【붙임-1】 인권 관련규정

○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[서울특별시조례 제7663호, 2020.7.16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9. 29., 2019. 3. 28.>

1. "인권"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

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8조(인권영향평가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6. 9. 29.]

제14조(설치)

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·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(이하 "인권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<개정 2016. 9. 29.>

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6. 9. 29.>

1.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·자문
2.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·자문
3.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, 정책에 대한 자문
4.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
5. 그 밖에 시장,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·자문
6.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

③ (생략)

제17조(정책 등의 개선 권고)

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·자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6. 9. 29.>

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,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9. 29.>

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9. 29.>

【붙임-2】 과태료 관련규정

○ 지방공기업법

제82조(과태료)

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(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5.12.15>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15.12.15, 2017.7.26>

[전문개정 2011.8.4]

○ 지방공기업법 시행령

제7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5.1.28>

[전문개정 2011.3.29]

○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질서위반행위"란 법률(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

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(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,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17조(과태료의 부과)

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5.>

제20조(이의제기)

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
제45조(이의신청)

① 당사자와 검사는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

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.

④ 당사자와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.

제46조(이의신청 방식)

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.

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.

제47조(이의신청 취하)

①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는 정식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.

② 이의신청의 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취하서를 제46조제1항에 따른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. 다만, 심문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다.

③ 법원은 제46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부분을 송달한 뒤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취하가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취하서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.

제48조(이의신청 각하)

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제49조(약식재판의 확정)

약식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정된다.

1. 제4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
2.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
3.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

제50조(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)

①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.

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

【붙임-3】 자치법규 개정 권고내용 (출처: 서울시 보도자료, '20.4.10.)

| 연번 | 인권영향평가 | | | | 권고사유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|------|--|
| | 평가항목 | 현재용어 | 대안용어 | 조항 | | |
| 총 계 | | | | 96 | | |
| 1 |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(9개 용어) | 계 | | 50 | | |
| | | 행상/노점상 | → | 거리가게 | 5 | '거리가게'는 '행상/노점상'의 순우리말로 서울시 행정 순화어임(2013) |
| | | 미혼 | → | 비혼 | 1 | 미혼은 결혼을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'하지 않은 것'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용어변경 필요 |
| | | 부모 | → | 보호자 | 1 | 부모 외의 대상(조부모 등)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음 |
| | | 소외계층·우범지역 | → | 취약계층·취약지역 | 14 |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및 해당지역에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 |
| | | 저출산 | → | 저출생 | 11 |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용어사용 |
| | | 유모차 | → | 유아차 | 4 | 유모차는 '어미'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개선필요: '유아' 중심으로 표현 |
| | | 자매결연 | → | 상호결연 (sister city) | 12 | 성차별적 용어이며 우월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보다 객관적인 용어로 순화 ※ 한국법제연구원(2015)에서 규정한 차별적 용어 |
| | | 장애등급 | → | 장애정도 | 1 |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선 필요 (장애인복지법) |
| | | 결손가정·결손가족 | → | 소년소녀가정·한부모가정 등 | 1 | 비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,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 서울시 행정순화어임(2019) |
| 2 | 편견·선입견에 근거하여 대상을 한정 | 계 | | 5 | | |
| | | 학생 | → | 청소년/시민 | 3 | 학생이 아닌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용어 사용 |
| | | 주부 | → | 여성 | 1 |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고용중단 여성을 '주부'로 특정할 우려가 있고, 실제 여성인턴십 사업으로 운영중 |
| | | 특정계층 지칭 | | | 1 | 편견과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민을 특정함으로써 차별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※ 주부, 학생 등 → 고용계약이 없는 자 |
| 3 | 입장 및 이용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| | 8 | 시설관리자가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일된 근거마련 및 시민의 문화권 보장 | | |
| 4 |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| | 4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외출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함. 이에 해당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해 관람(이용)료 면제하여 장애인 문화권 보장 | | |
| 5 | 반환권 제약 | | 8 | 시민이 공공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, 관람권(이용권) 반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반환권 권리보장 | | |
| 6 |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 | | 20 | 과태료가 부과·징수되는 경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(조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 확보) | | |
| 7 |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| | 1 | '장애'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, 「정신상의 장애」 문구 삭제 필요 | | |